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서상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01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12일
발 의 자: 서상열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규남,
김영철, 김종길, 김혜영,
문성호, 송경택, 송도호,
심미경, 윤기섭, 이상욱,
이원형, 장태용, 최민규,
허 훈, 황철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인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극심한 상황임
- 이에 서울특별시에서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할 때 배터리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고, 서울특별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를 지원할 때 배터리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, 공기업,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이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제조사를 공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)
- 나.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때 배터리제조사를 공개한 자동차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의 후단 중 “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”를 “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후단 중 “환경친화적”을 “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 있으며, 이 경우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----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사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)제2항 본문의 후단 중 “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”를 “가치가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”로 변경하고, 제5조(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제1항 후단 중 “환경친화적”을 “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”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3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